공장사후관리제도 및 형식승인 유효기간갱신제도 개선

1. 추진배경

성공적인 경제개발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단계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또 정부에서 매사를 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다. 정부는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효과적인 관리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전반의 자율화 시책에 맞추어 정부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와 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제도를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토결과 안전관리제도의 근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업무를 민간부문에서 실시하도록 방안을 결정하였다.

2. 제도개선내용

가. 자율적인 사후관리 실시

전기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제조구분별로 1종전기용품 제조업등록을 한 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상태에 대한 공장검사와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공장에 대해서는 2년마다 또는 공장등급에 따라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산업계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도변경〉

구 분	종 전	향 후
사 후 관 리	시·도	제조업체
주 기	5, 3, 1년	매 년
사후관리기준	공장검사평가기준	개정된 공장검사평가기준
사후관리내용	공장품질관리실태	공장품질관리실태 및 제품의 품질상태

시·도지사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사후관리현황보고서와 제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나. 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 업무위탁

현재까지 형식승인유효기간 갱신업무는 공업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해 왔다. 매년 2,000건이 넘는 갱신업무는 적지않은 업무부담이 되었다. 또한 유효기간 갱신업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조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 갱신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내용〉

구 분	종 전	향 후
신청기관	공업진흥청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갱신신청일	만료일 당일까지	만료일 2개월전
시료채취	업 체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시험비용	〃	업 체

〈갱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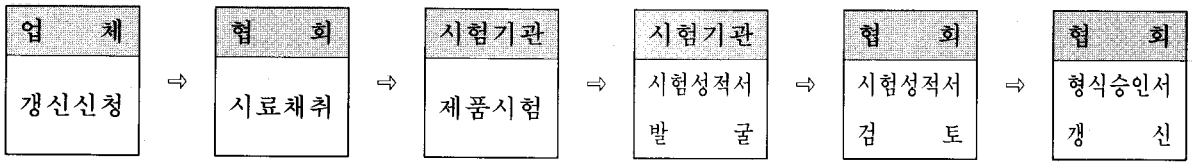

3. 제도개선의 효과 및 관리

제조업체에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업체에 모든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게 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제품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품질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효기간갱신은 제3자가 시료를 채취케 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수 있고 유효기간 갱신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업진흥청과 시·도, 협회는 사후관리 및 갱신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안전확보의 목적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상담 및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공업진흥청